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허가 시 산업집적법 및 중소기업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

## 관련 근거가 있나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집적법”) 제14조 제1항 15호 및 같은조 제3항, 동법 제14조의3 제3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약칭 “중소기업법”) 제35조 제2항 제14호 및 같은조 제4항

## 협의대상은 뭐죠?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공장

## 협의의제는 뭔가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검토

##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 대상여부 확인의뢰서 양식** 을 작성하여 **세움터 협의도서등록도구에 첨부\***하도록 안내

\* 첨부위치 : D[도면] → A[건축] → 1[개요] → A11[설계개요]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 2 건축허가 협의 시 **사이버통합협의시스템** 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협의 요청**

\* 협의대상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및 공장

-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앞으로 **협의알림 공문** 발송

- 4 협의 내용이 "대상"으로 회신된 건축허가 건은 **건축물 사용승인 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민원 접수증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행 계약서 등

## 만약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주는 착공 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 고용노동부는 건축주에게 해당 제출 대상 건축물의 제조 공정에 대한 **과태료(1,000만원 이하) 및 작업중지**
- ▶ 과태료 및 작업중지는 건축주의 사업 운영과 밀접한 사항으로 해당 제도 안내 및 협의 미실시에 대한 항의민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우리 공단은 아래와 같은 유사한 민원 사례가 발생할 경우 건축주에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 시 해당 의제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고,**
- ▶ **협의 누락 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부서에 문의**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민원사례

- ◆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 건축허가 민원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건축 소재지에서 사업을 운영중이던 민원인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조시설(공장)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로 과태료 및 사용중지 처분을 받음.
- ◆ 이에 민원인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에 해당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검토가 없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협의 주체인 공단은 건축허가 시 해당 의제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협의 누락 사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 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동의·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4. (생략)
  1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16. (생략)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시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장건축물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 ②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및 "공장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는 각각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으로 본다.
- ⑤~⑥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생략)
- ②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 13. (생략)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 ③ (생략)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역별 문의처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용산구·서초구·강남구	02-6711-2899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02-6924-8742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02-2086-8021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033-815-1084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033-820-255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051-520-0652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9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055-269-0543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055-371-754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062-949-8766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063-240-8544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063-460-3645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061-288-8742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061-689-4953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23

일선기관명	관할구역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32-510-0558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031-828-1935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032-680-651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031-540-3828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031-259-714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031-785-332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군위군	053-609-0559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제외)·구미시·구미구·구미공단(석적읍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053-650-6834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석적읍 제외)·구미공단(석적읍 제외)·영천시·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054-478-8032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054-271-2047
대전세종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042-620-5657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괴산군	043-230-7128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043-849-1015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 및 예산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태안군	041-570-3439